[제주콘텐츠진흥원 공고 제2025-076호]

2025 제주다양성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 연장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2025 제주다양성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5. 9.

(재)제주콘텐츠진흥원장

1. 사업목적

- 제주 배경 또는 소재(문화, 역사, 생활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을 장려
- 제주다양성영화 기획개발 과정에서의 영화적 연구와 창의적 접근을 지원하여 작품의 경쟁력 및 완성도 강화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다양성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5. 11. 30.까지
- **약정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 60일(약정기간 2개월)
- **지원내용** : 제주 영화인의 작품(제주 배경 또는 소재) 제작기획 및 시나리오 작업 등을 위한 기획개발 비용 지원

  ※ 기획개발 비용 범위
  - 전문가 활용비(멘토링비), 진행비(자료수집비, 회의비, 항공료 등)

- **지원대상** :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제주다양성영화(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에 한함) 중 촬영 준비 전 단계로, 시나리오 및 대본 집필(기획개발) 중인 작품
- **지원자격** : 당해사업 연도 이전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제작사업자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창작자 중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제작 경험이 있는 감독, 메인 프로듀서, 메인 작가 (※ 포트폴리오 1편 이상 제출 필수)

  ※ 도내 지역 또는 학교 출신자, 명예도민증 또는 재외도민증 소지자 포함
  ※ 신청자(사) 당 1편만 지원 가능하며, 본 사업의 선정 이력이 있는 작품은 신청 불가
  ※ 신청자(사) 외 영상 제작 참여 경험이 있는 작품 참여자 1인까지 동반 참여 가능(작품당 최대 2인)

○ **지원규모** : 3편 내외, 총 지원금 6,000천원

지원규모	지원내용	비고
총 3편 × 편당 2백만원	· 제주 영화인의 작품 기획개발 비용 지원 - 최대 2인, 60일 이내 지원	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사후 정산방식

※ 부문별 선정편수 및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공고 예정

○ **지원금 사용 용도** : 기획개발 용도로만 집행 가능 * 별첨 <사업비 집행기준> 참고

비목	세목	사용 용도
전문가 활용비	멘토링비	·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멘토 사례비 ※ 멘토링 1회 이상 필수사항 · 기획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문화적·역사적·법률적·기술적 자문 등에 의한 자문 사례비
진행비	자료 수집비	· 배경 조사나 자료 수집을 위한 자료 열람 및 도서자료, 문구류 구입비
	회의비	· 기획개발에 필요한 회의비 ※ 총 사업비의 30%까지 집행 가능, 부식비 불인정
	항공료	· 기획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항공료
	숙박비	· 기획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숙박시설 이용 비용 ※ 기획개발 참여인력 중 도외 거주자만 해당

○ **멘토링 안내** : 멘토링 1회 이상 필수사항

가. 작품 특성에 따라 신청자(사)가 멘토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

나. 멘토는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프로듀서에 한하며, 개봉 영화작을 통해 공식적으로 작품을 발표한 감독 또는 작가, 프로듀서에 한함

다. 멘토는 영화 기획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 보유자

○ **운영절차**

모집공고	▶	선정평가	▶	약정체결	▶
공고 안내 및 서류 신청·접수		전문가 구성 서면평가		(진흥원-신청자/사)	

사업수행	▶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금 지급
기획개발 시행 (멘토링 1회 이상)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정산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작품'을 대상으로 심의위원의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약정을 체결

3. 신청 및 접수

○ **연장 공고기간** : 2025. 4. 14.(월) ~ 5. 21.(수)

○ **연장 접수기간** : 2025. 4. 28.(월) ~ 5. 21.(수) 14:00까지, 24일간

※ 접수 마감일(5월 21일 수요일 14:00)까지 도착하지 않은 이메일은 접수되지 않음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click0925@ofjeju.kr)

※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 064-735-0622)
※ 제출서류(양식)는 진흥원 누리집(https://ofjeju.kr) [공지사항] 또는 [사업신청] 참조
※ 실적증명 자료 중 파일전송이 불가한 경우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가능(진흥원 본원 2층 콘텐츠육성팀)

○ **제출서류**

붙임	제출서류	유의사항	제출형식
1	지원신청서	·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붙임 1~10], 1개 파일을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PDF 파일명과 메일 제목은 '영화명_제주 다양성영화 기획개발 지원'으로 제출
2	사업계획서	·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	
3	영화참여 크레디트 증명	· 신청자(사)의 영상 제작 경험 증빙용	
4	트리트먼트 또는 기획구성안	· 장·단편 극영화 : 트리트먼트 또는 시나리오 제출 · 다큐멘터리 : 기획구성안 제출	
5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서명 또는 날인 필수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참여인력(최대 2인) 필수 기재	
7	예비 심의위원 추첨표	· 무작위로 3개의 번호를 지정하여 체크	
8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제작사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 개인 : 주민등록초본(참여인력 모두)	
9	국세 완납증명서	· 납세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10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청서 및 기타서류 등 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직인 또는 서명 후 PDF로 스캔하여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사)에 있음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 및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

담당자	메일주소	문의전화
콘텐츠육성팀 고경욱 주임연구원	click0925@ofjeju.kr	064-735-0622

4.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3인 내외로 구성

○ **심사일정** : 2025년 5월 중 (※ 진흥원 내·외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접수현황에 따라 심사의 세부내용 조정 가능)

1차 서류검토	▶	2차 서면심사	▶	발표
접수작 서류 검토 ※ 미비서류 발생 시 지원신청 취소될 수 있음		심사기준에 따른 서면심사		지원작품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 점
기획력	• 작품의 독창성 및 참신성 • 트리트먼트, 기획구성안의 완성도(이야기 구성의 완결성)	40점
발전 가능성	•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작품 보완 및 개선 가능성	20점
실현 가능성	• 기획의 실질적 실현성 및 제작실행(영화화) 가능성	20점
지역 기여도	• 작품 내 지역 요소 반영도(제주소재, 로케이션 등)	20점
합 계		**100점**

우대가점	• 진흥원 내 입주기업(2점)	2점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작품에 한하여 지원 선정

※ 선정작품의 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해 선정이 취소될 경우 후순위 작품에게 지원 승계할 수 있음

5. 지원조건 및 참여제한

○ **지원조건**

가. 우선협상작품 결과알림 이후 2025. 9. 30. 이전까지 원하는 일정에 기획개발을 시행하고, 시행일에 맞춰 약정체결을 완료해야 함

※ 시행 일정은 진흥원에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일정 중 1회 이상 진흥원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 시 사업 이행 여부에 따라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나. 기획개발 지원작은 멘토링을 1회 이상 필수로 진행해야 함

다. 기획개발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진흥원이 요청하는 양식의 결과보고서

(정산자료 포함) 및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라. 결과물에 대한 작품 제작(영화화) 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진흥원의 지원사실을 상영본(크레딧) 및 홍보물 등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기획개발 작품이 제작(영화화) 시 사전에 제작일정 및 내용을 진흥원에 필히 보고하여야 함

소정 양식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다양성영화 기획개발 지원작	Jeju 제주특별자치도 JDCO 제주콘텐츠진흥원

마. 진흥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성과물 및 수행기업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이후에도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참여제한** (신청 및 심사 제외 대상)

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촬영 예정이거나 이미 촬영이 시작된 경우

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과제 목표, 산출물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산하 유관기관 포함)로부터 중복하여 기획개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금의 재원이 국고, 기금, 도외 지자체, 민간단체 지원금인 경우 중복지원 가능하나 동일 항목의 중복수혜는 불가

라. 신청일 기준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완성본을 제출하지 않은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프로듀서, 작가 등 개인인 경우

마. 진흥원 지원사업의 정산/환수금 등이 미완료/미납 중이거나 진흥원 관련 규정 또는 협약 및 계약 등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프로듀서, 작가 등 개인인 경우

바.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 「영화인 신문고」 기준 스태프 등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 혹은 소송 중에 있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

아. 기타 심사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자.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 취소(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6. 지원금 지급・집행・정산

○ **약정체결**

가. 우선협상작품 대상 심의위원의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약정을 체결

나. 지원금액, 지원금 지급 방법, 정산기준, 결과보고서 등의 내용을 명기한 후 약정체결

○ 지원금 집행

가. 신청자(사)는 진흥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약정체결 시 등록한 카드의 지출만 증빙가능함

나. 집행기간은 약정서상 기획개발 수행기간(60일)으로 하며, 집행 사용처 중 진행비 성격의 항목은 제주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업체의 지출 영수증만 인정됨

다. 진흥원은 신청자(사)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 이 경우 신청자(사)는 성실히 응해야 함

○ 지원금 정산 및 지급

가. 신청자(사)는 기획개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진흥원이 요구하는 양식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나. 제출서류 검토 후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지원금 지급

※ 신청인(사)의 실제 지출금액을 확인하여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사후 정산 방식

- 지원 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한도 금액 지급
- 지원 금액 한도 미만으로 지출한 경우, 실제 지출 금액만큼 지급

다. 제출서류 : 공문 및 결과보고서, 집행 증빙자료(영수증 등), 기획개발 결과물 일체(시나리오 또는 구성안, 콘티, 로케이션 헌팅 보고서 및 사진, 전문가 자문결과, 멘토링 보고서, 향후 계획 등)

라. 사업비 사용결과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신청자(사)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신청자(사)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나. 다음의 경우 지원철회,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선정을 받은 경우

◦ 약정기간 내 기획개발을 시행하지 않거나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신청 내용과 비교하여 작품의 내용, 진행 목표 등이 사전협의 없이 현격히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신청자(사)가 법령의 규정, 지원금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진흥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신청자(사)의 사업수행 능력 상실 또는 지원작품(작가 포함)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거나 저작권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원칙적으로 해당 작품에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외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신청자(사)가 해결한 후 작품에 사용해야 함

◦ 기타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및 규칙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위 사유 등으로 계속해서 협약유지가 어려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지원사업 제재조치(과제가 중단된 경우, 향후 2년간 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및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조치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사)의 책임으로 봄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